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62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김은혜 · 서천호 · 엄태영
권영진 · 조지연 · 신성범
최은석 · 안상훈 · 안철수
이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

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63조제3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9조(임시조치)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u> <u>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u> <u>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u> <u>라 한다)의 부착</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u>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u> <u>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u> <u>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u> <u>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u> <u>하여서는 아니된다.</u> <u>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u> <u>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u> <u>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u> <u>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u>
4. ~ 6. (생 략) ② ~ ⑫ (생 략) <u><신 설></u>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② (생 략) ③ <u>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u>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④ (생 략)	<u>(變造)하는 행위</u> 3. <u>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u>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u> 2. <u>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u> ④ (현행과 같음)
---	---